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6일(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2년 11월 22일(목)

4. 관계법령

「의료법」(법률 제11141호, 2012. 9. 1 시행) 제27조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0 마포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서울시 아동·청소년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 치아 우식증(충치)으로, 서울시 충치 유병률을 보면 인구 1,000명 당 2001년 55명이었으나 2010년 180명으로 늘어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3-4학년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56.4%로 전국 평균 3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마포구 보건소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2008년 69.4%에서 2011년 40%로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구강검진, 구강진료, 구강예방교육,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의료법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